

농림축산식품부

훈계·주의 요구

제 목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 추진 부적정

기 관 명 경상남도

관 계 기 관 진주시, 함안군, 고성군, 하동군, 함양군, 합천군

관 련 자 ① 합천군○○○○센터 ○○○○과(전 ○○과) 지방○○주사보
○○○

② 합천군 ○○면(전 합천군 ○○과) 지방○○주사보 ○○

내 용

지방○○주사보 ○○○은 2013. 1. 1.부터 2014. 1. 13까지 합천군 ○○과에서, 지방○○주사보 ○○○은 2014. 1. 14.부터 2015. 10. 19까지 합천군 ○○과에서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 업무를 담당하였다.

경상남도에서는 국산 조사료 생산·이용을 활성화하여 생산비 절감 등 축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을 [표 1]과 같이 추진하고 있다.

[표 1] 2014년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 추진현황

세부사업명	지원조건	사업예산(단위 : 백만원)					주요내용
		계	국고	지방비	융자	자부담	
합계	-	33,240	6,324	12,991	7,010	6,915	
○○○○ 제조비	국 고 30% 지방비 60% 자 담 10%	12,644	3,793	7,586	-	1,265	- 사일리지 제조(소모품, 운송비 등)지원 - 단가 : 60천원/톤

「사료관리법」 제3조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사료의 수급조절·가격안정·품질향상 및 안전성 확보와 사료자원 개발 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2014년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 시행지침」에 따르면 사일리지 제조비를 지원하고자 하는 시·군은 사업대상자로 하여금 사일리지를 전량 계근하거나 표본 추출¹⁹³⁾(1일 제조량의 5% 이상, 최소 5개 이상) 계근토록 하고, 증빙자료로 중량을 확인(표본추출의 경우 공무원 입회)한 후에 제조비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53조의2에 따르면 사업주관 기관은 회계연도가 종료되었거나 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사업의 실적과 증거자료를 제출받아 검정을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조사료생산기반구축사업 중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사업자가 사일리지를 전량 또는 표본추출(공무원 입회)하여 계근토록 하고, 담당자는 정산시 농가 생산량, 지원단가 확인 등 보조금 집행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경상남도 진주시, 하동군 등 6개 시·군에서는 2014년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비를 지원하면서 [표 2] “2014년 조사료 사일리지 표본추출 계근 현황”과 같이 표본추출 계근 수량을 사업시행 지침에서 정하고 있는 최소 적용기준 5%이상 보다 매우 미달(0.5%)되게 산출하여 실시하는 등 사일리지 계근 측정업무를 형식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193) 표본추출 5% 계근시 수분함량 과다 또는 이물질 함유가 의심되는 경우 전수조사 실시(필요시 수분함량 및 현물 검사 병행가능)하고, 부적정한 것으로 확인된 물량은 지원대상에서 제외(건조 등을 통해 수분함량을 적정하게 하거나 이물질을 제거한 경우 재계근하여 지원 가능)

[표 2] 2014년 조사료 사일리지 표본추출 계근 현황

시·군	지원 대상자 (개소)	사일리지 제조비지원 현황			표본추출 현황		
		지원금액 (천원)	지원물량 (톤)	사일리지 수량(A)	전체추출 수량(B)	추출비율 (B/A)	공무원 입회여부
계	136	3,267,265	60,642	135,956	665	0.5	-
진주시	16	761,238	14,097	36,412	171	0.5	○
함안군	7	166,050	3,075	7,841	208	2.7	○
고성군	21	716,035	13,261	28,471	131	0.5	○
하동군	28	715,702	13,252	26,900	40	0.2	○
함양군	16	290,439	5,383	9,665	115	1.2	○
합천군	48	617,801	11,574	26,667	-	-	×

특히, 합천군의 경우에는 전량 또는 표본추출 계근 자체를 2년간(2013~2014년) 실시하지 않았으며, 2015년은 공무원이 입회도 하지 않은 채 일부 영농법인 위주로 계근을 실시한 자료를 기초로 평균중량을 적용하여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비를 지원하였으나 정산하는 과정에서 축산농가가 제출한 사일리지 생산량정산자료를 재검토하지 않아 실제지급액을 과소하게 지급하는 등 [표 3] “합천군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비 정산현황”과 같이 관련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표 3] 합천군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비 정산현황

연도별	법인명	정 산			검 토			차액 (천원)
		생산량 (톤)	단가 (천원)	금액 (천원)	생산량 (톤)	단가 (천원)	금액 (천원)	
합계		2,465.2	60	147,912	2,488.2	60	149,292	1,380
2013년	○○○○○○○법인	1,106	60	66,360	1,114	60	66,840	480
2014년	○○○○○○○법인	610	60	36,600	617	60	37,020	420
	○○○○○○○○○ ○○○○○법인	749.2	60	44,952	757.2	60	45,432	480

조치할 사항 합천군수는

[훈계] 위 관련자들을 훈계처분하시기 바랍니다.

진주시장, 함안군수, 고성군수, 하동군수, 함양군수, 합천군수는

[주의]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사일리지 제조비)를 지원할 경우에는 표본 추출, 중량 계근, 사업비 정산 등 관련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시기 바랍니다.